

**남양주 다산진전 공공주택지구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**

1.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(다산동 6051번지) 내 관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7. 23.

남 양 주 시 장

남양주 다산진전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1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1)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(변경)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분	계 획 내 용
-	복합1	용도	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0호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학원 제외)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1호 노유자시설 (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)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운동장 제외) ·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라목, 아목, 자목, 파목, 하목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%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
			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, 관람장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0호 교육연구시설(학교 및 학원 제외)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1호 노유자시설 (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) · 건축법시행령 [별표1] 제13호 운동시설(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, 운동장 제외) ·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라목, 아목, 자목, 파목, 하목 ※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%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.
		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
			· 50% 이하
		건폐율	· 250% 이하
		용적률	· 5층 이하
		높이	·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		배치	· 외벽의 재료, 형태 등 -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· 담장 -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. 단,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. · 옥상녹화 -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.
		형태	·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. ·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		색채	·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도에 따른다.
		건축선	

○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복합1	· 허용용도(관람장) 추가	·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관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바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) :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중 라목으로 같음

※ 지형도면 고시도(변경없음) : 게재생략